

의안번호	260
------	-----

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안

제안자	충청남도지사		제안일자	1997. 12. 11
위원회심사	소관위원회	기획경제위원회	회부일자	1997. 12. 12
	의결일자	1997. 12. 22	심사결과	원안가결
본회의심사	회차	제 117 회 임시회 6차 본회의		
	의결일자	1997. 12. 29	심의결과	원안가결
이송일자	1997. 12. 29		이송기관	충청남도지사
공포일자	1997. 12. 19		공포번호	2692

□ 개정이유

-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·시행하면서 그 타당성이라든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, 용역기관 선정의 적절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전례 답습적으로 운영되면서
- 관련자료의 수집과 검증의 부실, 심도있고 폭넓은 토론의 미흡, 용역 성과품의 활용도 저조등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실정으로
- 이같은 각종용역의 발주와 과업수행, 그리고 용역성과품의 활용등 용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므로써,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내용의 중복성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용역사례를 사전검토한 후 정책자문교수단 자문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
- 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하고, 위원수를 5~10인으로 하며, 위원에게 실비차원의 보상지급규정을 둠
- 용역추진상황에 따라 착수·중간·최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련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함
- 용역보고서를 집중적·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개발자료은행을 설치·운영하고, 자료은행은 행정자료실에 두는 것을 규정